

「평창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조례안 개요

- 제 안 자 : 이창열 의원
- 제안일자 : 2025. 3. 6.
- 회부일자 : 2025. 4. 1.
- 상정일자 : 2024. 4. 7.

2. 제안이유

- 「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」과 「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문화를 조성하고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.

3. 주요내용

-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(안 제4조)
- 접수 및 등록창구 설치·운영(안 제5조)
-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(안 제6조)
- 기증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(안 제7조)

4. 검토의견

가. 관련 근거

- 「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」 및 「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이식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이식받을 기회를 공평하게 보장하여야 하고, 장기등의 적출·이식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고, 이에 따라 조직기증자에 대한 지원 정책을 마련 및 추진하고 조직의 기증·이식에 대한 홍보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나. 입법의 취지

- 「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 지자체 의무사항과 「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의 지자체 의무사항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문화를 조성하고 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하고자 함.

다. 조례안의 주요내용

- 안 제4조(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에서 군수는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인식개선 및 활성화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함.

○ 안 제5조(접수 및 등록창구의 설치)에서 평창군 보건의료원 및 보건소 등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한 접수 및 등록창구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함.

○ 안 제6조(예우 및 지원)에서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규정함.

<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사항 >

1. 「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른 사용료 면제
2. 「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사용료 감면
3. 「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」에 따른 외래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
4. 「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른 관람료 면제
5. 장기기증자, 조직기증자 가족 또는 유족 대상으로 하는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
6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<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사항 >

1. 「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」에 따른 외래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100분의 30 감경
2. 「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른 관람료 100분의 50 감경
3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○ 안 제7조(홍보활동)에서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문화 활성화 및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의 날 지정, 홍보대사 위촉 및 활동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
5. 종합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을 통해 「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」과 「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한 조직기증자에 대한 지원 정책 및 조직의 기증·이식에 대한 홍보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문화 활성화 및 생명나눔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 및 필요성이 인정되고,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□ **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**

제6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이식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이식받을 기회를 공평하게 보장하여야 하고, 장기등의 적출·이식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기증·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.

1. 운전면허증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등기증희망자임을 표시(제15조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 중 원하는 사람에 한정한다)
2.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대한 각종 교육·홍보 및 교육·홍보사업에 대한 지원
3. 장기등기증희망자 및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정책의 마련 및 추진
4.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등의 기증·이식 관련 교육
5. 제13조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의 확대 및 지원

□ **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**

제27조(조직기증 지원사업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의 기증과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1. 조직기증자에 대한 지원 정책의 마련 및 추진
2. 조직의 기증·이식에 대한 홍보 지원
3. 조직기증희망자 표시(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운전면허증 등 증명

서에 표시하는 것으로서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조직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자 중 원하는 자에 한정한다)

② (생략)

붙임 **참고 자료**

□ **화천군 장기·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(2013.12.4.) 외 136건**

(관내 13곳: 강원특별자치도, 영월군, 원주시, 태백시, 횡성군, 화천군, 속초시, 철원군, 양구군, 강릉시, 인제군, 동해시, 삼척시)